

기강감사 결과보고서

- 취약시기 (VIP 해외순방) -

☐ 감사기간

- 사전조사: 2013.11.05. ~ 11.07. (3일간)

☐ 감사인원 : 총 4명

☐ 지적사항 : 확인서(시정) 1건, 현지조치 1건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이번 기강감사는 “취약시기(VIP 해외순방) 기강점검”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·비위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반부패·청렴 윤리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함.

2. 감사대상

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개 본부 내 8개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함.
【붙임】점검대상 기관현황 1부.

3. 감사기간 및 인원 등

2013.10.10.(목) ~ 2013.10.11.(금) 2일간 2개 반 4명으로 구성

○ 점검총괄 : 청렴윤리부장

- 1반: 차장 ○○○, 과장 ○○○(○○분소)

- 2반: 과장 ○○○, 과장 ○○○(○○.○○분소)

4. 감사중점 사항

이번 감사는 “취약시기(VIP APEC 정상회의 참석) 기강 및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·유지”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함

○ 임직원 복무점검

- 복무관리(출장, 외출, 휴가, 특근 등) 기본 복무관리 준수 여부
- 출·퇴근카드리더기 운영 및 최종퇴실자 점검부 작성의 적정성 여부

○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

- 출근 및 종식시간 준수 여부
- 공용재산의 사적사용(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등) 여부

○ 기타 점검

-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·유지 여부
- 문서보안 및 PC 공인인증서 관리

II. 감사처분 현황

감사결과 처분요구

시 정

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홀
대 상 기 관 ○○·○○본부 ○○○지사
내 용

「복무규정」제6조(초과근무)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형편상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는 특근명령부에 따라 명령하도록 하고 있고, 초과근무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경영지원실-6569(2013.09.26) 초과근무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시행과 재무부 업무연락(2013.10.29.) 초과근무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ERP 처리 안내에 따라 기술직4급 초과근무시간이 17시간(특근비 지급: 14시간 기준)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

아래 【 현황 】과 같이 2013년 10월 특근명령부를 작성함에 있어 카드 리더기 기록과 달리 직급별(기술직4급) 초과근무시간 기준(17시간) 보다 미달하였음에도 17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특근명령부를 작성하여 164,210원(5시간)을 초과 지급하였다.

【 현 황 】

성 명	직 급	초과근무 수당 지급 내역		회수금액	비 고
		정	오		
○ ○ ○	기술직4급	295,570	459,780	164,210	9시간=>14시간

조치할 사항

○○.○○○○장은 착오 지급한 특근수당(164,210원)을 회수조치 하고 소속직원들에게 특근명령부 작성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